

전주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1561 판결 [건물명도(인도)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제3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②, ③, ⑦, ⑧,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㉠ 부분 30㎡를 인도하고, 1,750,000원 및 2024. 4. 10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이용희

별지